
제1기 제8차 전국위원회

2026년 1월 17일(토) 오후 2시~6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zoom 온라인 회의



순서

14 : 00 – 14 : 05 모두발언

14 : 05 – 16 : 00 제8차 전국위원회 회의

❖ 회의 및 자료집 순서

모두발언

성원보고

개회선언

서기, 진행요원 지정

회순통과

안건 사항

1. 2026년 사민당 중앙당 1분기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준의 건
3.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의 건
4. 2026년 지방선거 기본방침(안) 논의의 건
5. 개혁진보 세력 연대 재논의의 건

※ 당규 제3호, 당규 제4호 일부 개정의 건

보고 사항

1. 2025년 사민당 중앙당 3, 4분기 결산 보고
2. 당대표, 국회의원 포상 진행
3. 사무총국 운영 보고
4.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별첨

1. 2026년 지방선거 대응 기본방침(안) (※ 현장 배포)
2. 개혁진보 세력 연대 재논의의 건 (※ 현장 배포)
3. 당규 제3호, 당규 제4호 일부 개정의 건

참고자료

회의규정



전국위원 명단

구분	명단
당대표	한창민
부대표	정혜연
당 소속 국회의원	(한창민)
광역 시도당위원장	송치용 김진호 (최혜선) (정혜연) 박형규(*지역 가나다순)
사무총장	김보경
<hr/>	
권역	전국위원
강원(2)	김덕기 조영진
경기인천(1)	서정범
대전,충청,세종(3)	목진오 이훈 최혜선
서울(3)	송성준 이병은 고석군
영남(2)	국민수 최영규
호남제주(2)	박봉리 이수현
지명직 전국위원(2)	강점석 박환수
<hr/>	
합계	21명

보고 사항

1. 2025년 사민당 중앙당 3, 4분기 결산
 2. 당대표, 국회의원 포상 진행
 3. 사무총국 운영 보고
 4.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

안건 사항

1. 2026년 사민당 중앙당 1분기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준의 건
3.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의 건
4. 2026년 지방선거 기본방침(안) 논의의 건
5. 개혁진보 세력 연대 재논의의 건

※ 당규 제3호, 당규 제4호 일부 개정의 건

[안건 1] 2026년 사민당 중앙당 1분기 예산안 심의 · 의결의 건

[주문사항] 당헌에 의거, 제출된 2026년 중앙당 1분기 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해주십시오

1. 관련규정

[당헌]

제4장 전국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 5.

6.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7. ...

제9장 전국위원회 직속 기구

제35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당 예산결산위원장은 전국위원회가 인준하며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 2026년 사민당 중앙당 1분기 예산안 의결의 건

1) 취지

- 예산 계획으로 당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2026년 지방선거 계획에 따라 당 수입과 지출에 큰 변동이 예상되는 바, 2026년 전체 예산안이 아닌 통상적 수준의 중앙당 1분기 예산안을 우선 상정함.

2) 경과

- 2026년 1월 8일 예결산위원회의 검토를 진행함. 이에 의견을 반영하여 1분기 예산안을 작성함.

3) 2026년 사민당 중앙당 1분기 예산안

2026년도 1분기 예산안		
기간: 사회민주당 2026년도 1월 1일 ~ 3월 31일		
예산과목	10월~12월	비고
	예산안	
[이월금]	34,907,445	
[당비]	32,500,000	
일반당비	20,000,000	지난분기 집행액 반영 증액함
특별당비	12,000,000	지난분기와 동일
직책당비	500,000	26년도 사업 관련 축소함
[기탁금]	-	
[후원금]	5,000,000	
[보조금]	9,023,000	
정당보조금-경상보조금	9,000,000	
정당보조금-선관위기탁금	23,000	
비교섭단체 정책개발비		
[기타수입]	-	
이자수입	-	
수입합계	46,523,000	
수입합계+이월금	81,430,445	
[기본경비]	32,250,000	
(인건비)	25,000,000	
상근자급여	10,500,000	상근 당직자 인원 변동(1인 감소)
비상근자급여	10,500,000	사무국 인원 변동
단기용역인건비	-	
세금	4,000,000	*갑근세, 지방소득세, 기타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복리후생비	-	
(비품및소모품비)	650,000	
비품구입비	500,000	지난분기와 동일
소모품비	150,000	지난분기와 동일
(사무소설치운영비)	5,900,000	
사무실 보증금	-	*추가 지출 금액 없음
임차료+관리비	3,400,000	
관리유지비	2,500,000	
차량유지비	-	
(공공요금)	700,000	

통신요금	270,000	
우편/운송료	30,000	
당비자동이체수수료	400,000	
[정치활동비]	13,150,000	
(정책개발비)	2,700,000	
연구소지원금	2,700,000	
정책개발비	-	
연구용역비	-	
(교육훈련비)	50,000	
(조직활동비)	1,600,000	
회의비(간담회)	500,000	
출장비	100,000	
연대사업비	-	
조직사업비-당원소통	-	
조직사업비-정당현수막	1,000,000	
당내선거비용	-	
홍보비	100,000	
(여성정치발전비)	1,850,000	
기본경비	-	
정책개발비	1,850,000	
총선지원금	-	
조직활동비	-	
(청년정치발전비)	1,850,000	
기본경비	-	
정책개발비	-	
총선지원금	-	
조직활동비	1,850,000	
(지원금)	5,000,000	
지역교부금	5,000,000	
(기타)	-	
[퇴직적립금]	5,000,000	
[예비비]	-	
지출합계	50,400,000	
잔액	31,030,445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금

사회민주당중앙당후원회

[이월금]	1,035,962	
[후원금]	3000000	
수입(후원금) + 이월금	4,035,962	
[기본경비]	50000	

(세금)		
(관리유지비)	50000	
[후원금 정당 귀속금 이전]	0	
지출합계	50000	
잔액	3,985,962	
정당 및 후원회 정치자금 잔액(참고)	35,016,407	

[안건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준의 건

[주문사항] 당규에 의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인준해주십시오

1. 관련규정

[당규]

제9호 선거관리 규정

제2장 선거관리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2.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인준의 건

1) 취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 중 1인이 사임함. 이에 선거관리위원을 추가 선임하여 선거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 함.

2) 경과

– 위선희 선거관리위원이 사임함.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 전교탁, 선거관리위원 정광호로 구성되어 있음.
–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으로 국민수 당원을 추천함.

[안건 3]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의 건

[주문사항] 당규에 의거, 부대표 권위에 의한 보궐선거 미실시 건을 결정해주십시오

1. 관련규정

[당규]

제4조 (당대표 및 부대표의 권위)

- ① 대표가 권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다득표 부대표가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② 당대표와 부대표의 전부 혹은 일부의 권위 또는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의 시행 여부 및 선출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제62조 (보궐선거)

- ① 본 당규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② 당대표, 광역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는 보궐선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 ③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④ 본 조 제①항 및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임기만료일까지 6개월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보궐선거 유예 결정의 건

1) 취지

- 부대표 권위로 인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이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려 함.

2) 경과

- 당대표, 부대표의 임기 만료일은 2026년 7월 2일임.
- 2026년 1월 7일 임명회 부대표가 사임함에 따라 부대표 권위 발생. 잔여임기는 6개월 미만임.

[안건 4] 2026년 지방선거 기본방침(안) 논의의 건

[주문사항] 당헌에 의거, 제출된 사민당 2026년 지방선거 기본방침(안)을 논의하여 주십시오

1. 관련규정

[당헌]

제4장 전국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 9.
10. 대표단 회의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11. 당의 정책 및 사업 등 주요한 결정
12.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2. 사민당 2026년 지방선거 기본방침(안) 논의의 건

※ 회의자료 <별첨 1.>로 올림.

[안건 5] 개혁진보 세력 연대 재논의의 건

[주문사항] 당헌에 의거, 개혁진보 세력 연대의 건을 재논의해주십시오

1. 관련규정

[당헌]

제4장 전국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

10. 대표단회의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1. 당의 정책 및 사업 등 주요한 결정

12.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2. 개혁진보 세력 연대 재논의의 건

※ 회의자료 <별첨 2.>로 올림.

[※안건] 당규 제3호, 당규 제4호 일부 개정의 건

[주문사항] 당헌에 의거, 제출된 당규 제3호(당원총투표), 당규 제4호(전국위원회)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해주십시오

1. 관련규정

[당헌]

제4장 전국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 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 ... 10. 대표단회의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 11. 당의 정책 및 사업 등 주요한 결정
- 12.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2. 당규 제3호(당원총투표), 당규 제4호(전국위원회) 일부 개정의 건

※ 회의자료 <별첨 3.>로 올립.

보고 1**2025년 사민당 중앙당 3, 4분기 결산**

- 2025년도 중앙당 3, 4분기 수입지출 결산을 전국위원회에 보고함.

2025년도 3분기 결산 총괄표

기간: 사회민주당 2025년도 7월 1일 ~ 9월 30일

예산과목	7월~9월				비고
	예산액(A)	집행액(B)	차감잔액 (A-B)	집행 율	
[이월금]		12,827,318			
[당비]	30,000,000	46,007,773	-16,007,773	153%	
일반당비	15,000,000	19,107,773	-4,107,773	127%	
특별당비	12,000,000	24,600,000	-12,600,000	205%	
직책당비	3,000,000	2,300,000	700,000	77%	
[기탁금]	-	-	-	-	
[후원금]	10,000,000	1,366,032	8,633,968	14%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 정당 구속
[보조금]	19,049,000	11,160,740		59%	
정당보조금-경상보조금	9,000,000	9,131,430	-131,430	101%	
정당보조금-선관위기탁금	49,000	29,310	19,690	60%	
비교섭단체 정책개발비	10,000,000	2,000,000	8,000,000	20%	
[기타수입]	3,000	4,855	-1,855	162%	

이자수입	3,000	3,655	-655	122%	
기타	-	1,200	-1,200		
수입합계	59,052,000	58,539,400	512,600	99%	
수입합계+이월금	59,052,000	71,366,718	-12,314,718	121%	
[기본경비]	38,260,000	43,131,870	-4,871,870	113%	
(인건비)	31,000,000	34,579,170	-3,579,170	112%	
상근자급여	25,400,000	21,003,000	4,397,000	83%	
비상근자급여	4,500,000	5,471,000	-971,000	122%	
단기용역인건비	1,000,000	3,419,000	-2,419,000		
세금	100,000	4,686,170	-4,586,170	4686%	*갑근세, 지방소득세, 기타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복리후생비	-	-	-		
(비품및소모품비)	650,000	1,203,280	-553,280	185%	
비품구입비	500,000	1,203,280	-703,280	241%	
소모품비	150,000	-	150,000	0%	
(사무소설치운영비)	5,900,000	6,561,561	-661,561	111%	
사무실 보증금	-	-	-		
임차료+관리비	3,400,000	3,383,950	16,050	100%	
관리유지비	2,500,000	3,177,611	-677,611	127%	*세무사계약, 홈페이지 서버, 당원관리시스템 유지, 전자결재/근태관 리 시스템 이용료 등
차량유지비	-	-	-		

(공공요금)	710,000	787,859	-77,859	111%	
통신요금	270,000	276,019	-6,019	102%	
우편/운송료	100,000	91,440	8,560	91%	
당비자동이체수 수료	340,000	420,400	-80,400	124%	
[정치활동비]	19,700,000	11,798,050	7,901,950	60%	
(정책개발비)	2,700,000	2,750,000	-50,000	102%	
연구소지원금	2,700,000	2,750,000	-50,000	102%	
정책개발비	-	-	-	-	
연구용역비	-	-	-	-	
(교육훈련비)	-	112,000	-112,000	-	
교육사업비	-	112,000	-112,000	-	
(조직활동비)	5,500,000	2,432,750	3,067,250	44%	
회의비(간담회)	900,000	297,000	603,000	33%	
출장비	600,000	233,700	366,300	39%	
업무지도비	-	-	-	-	
연대사업비	1,500,000	251,550	1,248,450	17%	
조직사업비-당원 소통	1,000,000	-	1,000,000	0%	
조직사업비-정당 현수막	1,500,000	1,650,500	-150,500	110%	
당내선거비용	-	-	-	-	

홍보비	300,000	56,000	244,000	19%	
(여성정치발전비)	1,850,000	-	1,850,000		
기본경비	-	-	-		
정책개발비	1,850,000	-	1,850,000		
총선지원금	-	-	-	-	
조직활동비	-	-	-	-	
(청년정치발전비)	1,850,000	-	1,850,000		
기본경비	-	-	-		
정책개발비	-	-	-		
총선지원금	-	-	-		
조직활동비	1,850,000	-	1,850,000		
(지원금)	6,500,000	6,404,500	95,500	99%	
지역교부금	6,500,000	6,404,500	95,500	99%	
지역교부금외	-	-	-		
(기타)	1,000,000	42,800	957,200	4%	
기타	1,000,000	42,800	957,200	4%	
[퇴직적립금]	-	-	-	-	
[예비비]	-	-	-	-	
지출합계	57,960,000	54,929,920	3,030,080	95%	

잔액	-	16,436,798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 금
사회민주당중앙당후원회					
[이월금]		1,491,532			
[후원금]	-	717,014			
수입(후원금) + 이월금		2,208,546			
[기본경비]		613,000			
(세금)		62,500			
(관리유지비)		550,500			*세무사계약, 수수료 등
[후원금 정당 귀 속금 이전]		1,366,032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 원금 정당 귀속
지출합계		1,979,032			
잔액		229,514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 금
정당 및 후원회 정치자금 잔액 총액(참고)	-	16,666,312			*정당 정치자금 잔액과 후원회 정치자금 잔액을 합산한 총액(참고용)

2025년도 4분기 결산 총괄표

기간: 사회민주당 2025년도 10월 1일 ~ 12월 31일

예산과목	10월~12월				비고
	예산액(A)	집행액(B)	차감잔액 (A-B)	집행 율	
[이월금]		16,436,798			
[당비]	27,500,000	38,389,218	-10,889,218	140%	
일반당비	15,000,000	20,889,218	-5,889,218	139%	
특별당비	12,000,000	17,000,000	-5,000,000	142%	
직책당비	500,000	500,000	-	100%	
[기탁금]	-	-	-	-	
[후원금]	10,000,000	21,543,774	-11,543,774	215%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 정당 귀속
[보조금]	56,023,000	56,155,110		100%	
정당보조금-경상 보조금	9,000,000	9,131,430	-131,430	101%	
정당보조금-선관 위기탁금	23,000	23,680	-680	103%	
비교섭단체 정 책개발비	47,000,000	47,000,000	-	100%	
[기타수입]	-	5,342	-5,342		
이자수입	-	5,342	-5,342		
기타	-		-		
수입합계	93,523,000	116,093,444	-22,570,444	124%	

수입합계+이월금	93,523,000	132,530,242	-39,007,242	142%	
[기본경비]	85,253,000	82,529,393	2,723,607	97%	
(인건비)	78,003,000	75,984,950	2,018,050	97%	
상근자급여	24,003,000	23,446,340	556,660	98%	
비상근자급여	6,000,000	5,955,000	45,000	99%	
단기용역인건비	44,000,000	42,745,900	1,254,100	97%	
세금	4,000,000	3,837,710	162,290	96%	*갑근세, 지방소득세, 기타소득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복리후생비	-	-	-		
(비품및소모품비)	650,000	-	650,000	0%	
비품구입비	500,000	-	500,000	0%	
소모품비	150,000	-	150,000	0%	
(사무소설치운영비)	5,900,000	5,854,813	45,187	99%	
사무실 보증금	-	-	-		
임차료+관리비	3,400,000	3,385,740	14,260	100%	
관리유지비	2,500,000	2,469,073	30,927	99%	*세무사계약, 홈페이지 서버, 당원관리시스템 유지, 전자결재/근태관 리 시스템 이용료 등
차량유지비	-	-	-		
(공공요금)	700,000	689,630	10,370	99%	
통신요금	270,000	224,310	45,690	83%	
우편/운송료	30,000	5,040	24,960	17%	

당비자동이체수 수료	400,000	460,280	-60,280	115%	
[정치활동비]	14,150,000	15,093,404	-943,404	107%	
(정책개발비)	2,700,000	2,750,000	-50,000	102%	
연구소지원금	2,700,000	2,750,000	-50,000	102%	
정책개발비	-	-	-	-	
연구용역비	-	-	-	-	
(교육훈련비)	50,000	43,000	7,000	-	
교육사업비	50,000	43,000	7,000	-	
(조직활동비)	1,600,000	1,443,640	156,360	90%	
회의비(간담회)	500,000	462,000	38,000	92%	
출장비	100,000	94,200	5,800	94%	
업무지도비	-	-	-	-	
연대사업비		90,440	-90,440		
조직사업비-당원 소통		-	-	-	
조직사업비-정당 현수막	1,000,000	797,000	203,000	80%	
당내선거비용	-	-	-	-	
홍보비	100,000	107,714	-7,714	108%	
(여성정치발전비)	1,850,000	3,530,050	-1,680,050	191%	
기본경비	-	-	-	-	

정책개발비	1,850,000	3,530,050	-1,680,050		
총선지원금	-	-	-	-	
조직활동비	-	-	-	-	
(청년정치발전비)	1,850,000	2,475,500	-625,500	134%	
기본경비	-	-	-		
정책개발비	-	-	-		
총선지원금	-	-	-		
조직활동비	1,850,000	2,475,500	-625,500		
(지원금)	5,000,000	4,716,000	284,000	94%	
지역교부금	5,000,000	4,716,000	284,000	94%	
지역교부금외	-	-	-		
(기타)	1,000,000	27,500	972,500	3%	
기타		27,500	-27,500		
[퇴직적립금]	-	-	-	-	
[예비비]	-	-	-	-	
지출합계	99,403,000	97,622,797	1,780,203	98%	
잔액	-	34,907,445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 금
사회민주당중앙당후원회					
[이월금]		229,514			

[후원금]	13,000,000	22,656,122	-9,656,122	174%	
수입(후원금) + 이월금	13,229,514	22,885,636	-9,656,122	173%	
[기본경비]	50,000	305,900			
(세금)					
(관리유지비)	50,000	4,400			*세무사계약, 수수료 등
[후원금 반환]		301,500			법인 후원 등.
[후원금 정당 귀 속금 이전]	10,000,000	21,543,774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 원금 정당 귀속
지출합계	10,050,000	21,849,674			
잔액		1,035,962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 금
정당 및 후원회 정치자금 잔액 총액(참고)	-	35,943,407			*정당 정치자금 잔액과 후원회 정치자금 잔액을 합산한 총액(참고용)

2025년도 3/4분기 및 4/4분기 (7월 1일~12월 31일)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감사 결과

- 검토근거: '당헌 제35조(예산결산위원회)와 제41조(예산과 결산의 회계)'에 근거하여 2025년 3/4분기 및 4/4분기 (7월1일~12월31일) 회계 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
- 감사시기 :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피감기관 : 중앙당
- 감사방법 : 수입/지출내역 자료 검토 및 회계 실무자 면담
(사무총장 김보경, 부총장 고문석, 양윤찬)
- 검토자 : 예산결산위원회 송명호(위원장), 박명준, 박봉리(online)
- 검토 의견

- 조직활동비 예산 자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밖에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초과 집행하는 것보다도 집행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활동비가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당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 퇴직적립금의 적립 필요성을 재차 촉구합니다. 매달 적립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당비 및 후원금 예산을 확충하시고 적극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에 지방선거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은 2026년 2/4분기에 집중되겠지만 1/4분기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사회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송명호 (직인 생략)

보고 2

당대표, 국회의원 포상 진행

○ 2026년 당대표, 국회의원 포상 진행

- 각 시도당위원장 추천으로 진행
- 수여식은 각 시도당별로 진행 예정

사회민주당 당대표 포상 추천 명단

- | | | |
|---|-------|-----|
| 1 | 경기도당 | 김도겸 |
| 2 | 부산창준위 | 박재철 |
| 3 | 부산창준위 | 전용복 |
| 4 | 서울시당 | 박명준 |
| 5 | 전북도당 | 이수현 |

국회의원 한창민 포상 추천 명단

- | | | |
|---|-------|-------|
| 1 | 경기도당 | 김숙영 |
| 2 | 부산창준위 | 문성호 |
| 3 | 서울시당 | 김문주 |
| 4 | 서울시당 | 박선영 |
| 5 | 전북도당 | 시민의 숲 |
| 6 | 대전시당 | 천성애 |
| 7 | 대전시당 | 조미숙 |
| 8 | 대전시당 | 목진오 |
| 9 | 대전시당 | 김귀영 |

보고 3

사무총국 운영 보고

○ 사무총국 당직자 변동의 건

- 위선희 사무차장 사임
- 양윤찬 홍보팀장 중앙당 상근

-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중앙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추천을 진행할 예정. 차기 전국위원회에서 인준.

관련규정**[당규]****제5조 (구성 및 선출방법)**

- ① 각급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13조 (징계처분의 종류)

- ① 징계처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 징계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처분
 2. 당원자격정지 : 징계대상자의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 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
 3. 당직자격정지 :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를 제외한 당직의 행사와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
 4. 경고 :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징계처분

제24조 (비상징계)

- ①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 단회의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비상징계의 사유가 해소되는 때에는 징계협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본 당규에 의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 별첨 3. 당규 제3호, 당규 제4호 일부 개정의 건>

당규 개정안 발의

발의 전국위원 : 최영규, 박형규, 송치용, 국민수, 송성준, 서정범, 이수현, 이훈

사회민주당 당규 제13호(회의규정) 제13조(전국위원회 의제) 제③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규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1. 개정안 제목

당규 제3호(당원총투표), 당규 제4호(전국위원회) 일부개정안

2. 개정안 제안 취지

- 당의 합당과 해산은 당의 존립 자체에 관한 중대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행 당규는 이에 대한 민주적 합의 수준이 낮고, 절차상 불충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 현행 당규는 당원 발의 당원총투표에서만 합당·해산을 제한하고 있어, 집행기구인 대표단의 발의만으로 당원총투표를 통해 당의 소멸을 결정할 수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는 최고 대의기구인 전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합니다.
- 또한 현행 당규는 합당·해산에 대한 전국위원회의 의결 요건과 당원총투표의 확정 요건이 일반 안건과 동일하여, 당의 존립이라는 중대 사항에 대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합당은 단지 과반이 아니라 더 많은 당원들이 찬성해야 추진 가능한 사안입니다. 합당은 그 정치적 대의가 분명하다 해도, 창당과 선거 과정에서 국민과 당원에게 했던 약속을 위배하여 당을 소멸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당 논의는 다수가 찬성하지 않는 한 논의 자체만으로도 분당 혹은 이탈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따라서 대의기구의 깊은 숙의와 높은 찬성 없이 이루어진 합당 관련 사안을 당원들에게 단순 과반 다수결로 묻는 것은, 당원들은 국민들에 대한 공당의 정치적 책임을 위배하는 일입니다.
- 이와 같은 문제를 당규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본 안건의 제안은 기존 당대표단의 권한을 축소 및 삭제하는 것이 아닌, 당규의 미비로 발생한 오류를 정정하여, 숙의의 과정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당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국위원회 의결 요건의 미비

: 전국위원회는 당원의 대의기구로서 당의 중대사를 신중히 심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당규는 합당·해산 발의에 대한 특별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아, 일반 안건과 동일한 과반수로 당의 존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의자들의 합의 수준이 3분의 2는 되어야 당원총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가중 요건을 두어, 대의기구의 신중한 숙의를 담보해야 합니다.

둘째, 당원총투표 확정 요건의 낮은 문턱

: 현행 당규는 주권당원 투표율 20%에, 전체 투표값 중 찬성 1/2로 합당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술적으로 주권당원의 단 10%만 찬성해도 당이 소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의 존폐라는 중대 사안에서 이러한 낮은 합의 수준은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당원총투표 찬성 요건을 3분의 2로 상향해야 합니다.

또한 성사 투표율이 주권당원만을 기준으로 하는 바, 최소한 전체 주권당원의 30.0% 이상으로 성사 투표율을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합당/해산에 대한 더 많은 당원의 동의를 담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당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표단 발의 당원총투표에서 합당·해산과 관련 안건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여, 당의 존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최고 대의기구인 전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둘째, 전국위원회가 합당·해산 및 관련한 당원총투표를 발의할 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여, 대의자들의 최대 합의를 통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며, 위약을 전제로 한 중대 결정에는 높은 수준의 지지가 필요함을 명확히 합니다.

셋째, 합당·해산에 관한 당원총투표의 확정 요건을 주권당원 100분의 30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여, 전체 당원의 최소 20.0% 이상이 찬성해야만 당의 합당이나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당원의 최대 동의가 있을 때만 당의 존립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당의 결속력을 담보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당의 합당과 해산은 전국위원회 재적 3분의 2 찬성(발의) → 당원총투표 찬성 3분의 2(확정)이라는 강화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합시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당규 제3호(당원총투표) 개정

1) 제6조(당원총투표 대상의 제한) 제③항 신설

- 대표단 발의 당원총투표에서 합당·해산 안건을 제한하여, 집행기구가 최고 대의기구의 심의 없이 당의 소멸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함 (제6조 제③항 신설)

2) 제19조(당원총투표 결과의 확정) 제②항 신설 및 항 이동

- 합당·해산에 관한 당원총투표는 주권당원 100분의 30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하도록 강화함 (제19조 제②항 신설)
- 기존 제②항부터 제④항까지를 각각 제③항부터 제⑤항으로 이동함

나. 당규 제4호(전국위원회) 개정

1) 제3조의2(의결정족수) 신설

- 전국위원회의 일반 의결정족수를 명시하고, 합당·해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함 (제3조의2 신설)

4. 개정안

■ 당규 제3호(당원총투표) 일부개정안

제6조(당원총투표 대상의 제한)

- ①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대표단 발의 당원총투표는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당원총투표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을 당원총투표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9조(당원총투표 결과의 확정)

- ① 당원총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권당원 100분의 20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주권당원 중 투표한 자가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2. 당원총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당원총투표는 주권당원 100분의 30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확정한다. 주권당원 중 투표한 자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주권당원 중 투표한 자가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당원총투표는 주권당원 중 투표한 자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당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②항 및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당대표는 당원총투표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 제④항과 같음)

■ 당규 제4호(전국위원회) 일부개정안

제3조의2(의결정족수) <신설>

전국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당원총투표 발의(당의 합당과 해산을 추진하는 결의 안건, 그 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안건 등의 당원총투표의 발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본 당규 개정안은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신·구조문대비표

[당규 제3호(당원총투표)]

제6조(당원총투표 대상의 제한)

현행	개정안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대표단 발의 당원총투표는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당원총투표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9조(당원총투표 결과의 확정)

현행	개정안
<p>① 당원총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권당원 100분의 20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권당원 중 투표한 자가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2. 당원총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p>① (현행과 같음)</p>
<p><신설></p>	<p>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당원총투표는 주권당원 100분의 30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확정한다. 주권당원 중 투표한 자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p>
<p>② 주권당원 중 투표한 자가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p>	<p>③ 주권당원 중 투표한 자가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당원총투표는 주권당원 중 투표한 자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p>
<p>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당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당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②항 및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 당대표는 당원총투표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현행 제④항과 같음)</p>

[당규 제4호(전국위원회)]

제3조의2(의결정족수)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3조의2(의결정족수) <신설></p> <p>전국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당원총투표 발의(당의 합당과</p>

해산을 추진하는 결의 안건, 그 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안건 등의 당원총투표의 발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참고사항

1) 대한민국 헌법 개정 요건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민투표 실시
- 대의자들의 찬성이 높아야 한다는 가중요건을 두고 있음

2)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 통합 (2011)

-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통합 안건 의결 (2011.11.27)
- 대의원대회를 통해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

사회민주당 회의규정

당규 제13호 회의규정 [제정 2025. 6.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전국위원회 등 당의 주요 회의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 ① 본 당규는 당헌이나 다른 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전국위원회에 적용한다.
- ② 당내 각종 기구의 경우에는 자체 회의 규약이 없을 경우 본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당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장”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2. “회의참가자”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 개최일 현재 당규 제1호 제2조 제③항의 규정 요건을 충족하고,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회의에 참가한 자를 의미한다.

제4조 (온라인 회의)

- ① 회의 참가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석자도 오프라인 참석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발언·토론·의결할 수 있다.
- ②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전국위원회에서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
 2.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것으로 의장이 결정한 경우

제2장 개회와 폐회

제5조 (의사, 의결정족수)

모든 회의는 당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재적자 1/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재적자의 과반수 참석과 재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재적의 총수)

- ① 재적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수에서 사고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 ② 사고자의 수는 구속, 수배, 형의 집행, 업무상 해외출장, 입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자 및 당비미납, 교육미이수, 징계로 인해 자격이 없는 자를 포함한다. 단,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

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된다.

- ③ 의장은 성원보고 전에 이미 확인한 사고자의 수와 성명, 사고사유를 밝힌다. 다만, 전국위원회의 경우는 사고자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성원보고)

- 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재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했음을 밝혀야 한다.
- ②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적자의 수, 의사정족수, 재석자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제8조 (개회선언)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9조 (유회)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0조 (정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 개회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제11조 (회의 중 정족수 미달)

의장은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산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제12조 (폐회)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 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제3장 의제

제13조 (전국위원회의 의제)

- ① 전국위원회의 의제는 당헌 제9조 제③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 ② 의장은 전국위원회 안건과 회의 자료를 5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단, 의장이 비공개로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자료의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 ③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 5인 이상 또는 전체 당원 총수의 1%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 당일 안건 발의는 전국위원 재적인원 1/4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 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의장은 제출된 안건을 즉시 공표해야 한다.
- ④ 의장단은 회의 종료 전,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⑤ 의장이 본 조 제②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국위원 5인 이상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4장 동의

제14조 (동의의 종류)

회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정동의
2. 의사진행동의
3. 변안동의
4. 긴급동의

제15조 (수정동의)

- ① 전국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 ②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 ③ 변안동의, 의사진행동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제16조 (의사진행동의)

- ①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의사진행 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 ② 의사진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의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토론을 시작한다.
 2. 토론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토론이나 수정동의 제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표결을 시작한다.
 3. 안건반려 : 의결되면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중지되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룬다. 안건 발의자는 차기 회의에 안건 내용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단, 본 조 제②항 제2호와 제3호는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찬성, 반대토론이 각 1회 이상을 진행한 후 발의할 수 있다.
- ④ 의사진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변안동의)

- ① 의결이 끝난 안건을 같은 회의에서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는 변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② 변안동의는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긴급동의)

- ①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긴급 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 ② 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 :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한다.
 2. 의장불신임 : 발의되면 의장은 의장석을 떠나며, 전국위원회의 경우는 부대표 중 1인이 남은

회의를 진행한다.

- ③ 긴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안건 철회)

본 당규 제14조(전국위원회 의제) 제3호의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제20조 (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단,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발언

제21조 (발언 신청과 허가)

- ①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손을 들고 ‘의장’을 불러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
- ②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는 예외로 한다.
- ③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를 제안할 때에는 발언권을 신청하면서 그 동의를 표현해야 한다.
- ④ 의장은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 제안 발언은 즉시 허가해야 하며, 그 외의 발언은 취지를 물어 허가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22조 (발언 시작 및 횟수의 제한 등)

- ①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 ②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질의에 응답할 때
 2.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3. 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 ③ 전국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1인당 발언횟수가 제한되지 않는다.

제23조 (발언 시간의 제한)

- ① 발언자는 3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 ② 특별히 3분 이상의 발언 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4조 (발언 중지 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발언이 상정된 안건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의사진행동의 또는 긴급동의를 신청하고 의제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경우
3.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 시간제한을 어긴 경우

제6장 안건 토의

제25조 (회순)

- ①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한다.
- ② 회순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안건 상정)

- ①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한다.
- ② 안건 상정은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낭독하고 상정을 선포함으로서 이루어진다.
- ③ 의장은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제27조 (제안 설명)

- ① 안건 상정 직후 안건 발의자 중 1인이 제안 설명을 한다.
- ② 제안 설명의 내용은 의장에게 문서로 제출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설명자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질의와 토론)

- 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의 발의자 또는 수정동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②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며, 토론 방식은 규정에 따른다.
- ③ 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제29조 (축조심의)

- ①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한다. 단, 의장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몇 개의 조항을 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30조 (토론 방식)

- ① 찬반토론 시 토론자 수는 찬반 각 2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2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② 찬반토론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찬성-반대-반대-찬성
- ③ 3개 이상의 복수 안을 놓고 토론할 경우 토론자 수는 각 안에 대해 2인으로 제한한다. 단,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2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④ 복수 안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안-2안-3안 ... / 2안-3안 ... 1안 / 3안 ... 1안-2안
-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각 의견에 대해 동수로 토론자를 정해 추가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 ⑥ 전국위원회의 경우 의장은 토론자 수를 3인 이내로 할 수 있고, 찬반토론자 수를 동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 (전국위원회 의장단)

- ① 의장은 당대표가 맡고, 당대표가 지명한 1인의 부대표가 부의장을 맡는다.
- ② 당대표가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다득표 부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이 때 나머지 부대표 중 1인이 부의장을 맡는다.
- ③ 당규 제5호 제5조(비상대책기구) 제②항에 의하여 소집된 전국위원회는 광역시·도당 위원장

중 호선된 1인이 비상대책기구가 구성될 때까지 임시의장을 맡는다.

제32조 (의장단의 토론 참가)

-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고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 ② 부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7장 의결

제33조 (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 ①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의 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회의 성원은 표결에 있어서 이미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5조 (표결 시작)

- ①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함께 표결 시작을 선포한다.
- ②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포한 이후 표결이 끝날 때까지 표결 절차에 관련된 것 이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제36조 (표결방법)

의장은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표결방법을 정한다. 다만, 인사에 관한 표결의 경우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37조 (표결순서)

-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결한다.
- ② 동일의제에 대하여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 ③ 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38조 (검표와 개표)

의장은 투표 시작 전에 검표위원과 개표위원을 지명하여 회의성원의 동의를 구하고, 그 위원의 입회하에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9조 (의결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제8장 인터넷 생중계, 의사록 및 회의결과

제40조 (인터넷 생중계)

전국위원회는 인터넷 생중계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단 또는 당대표의 승인 하에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41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

① 회의록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결 상황 : 재적인원 수, 사고인원 수와 명단, 참석인원 수와 명단, 불참인원 수와 명단, 이석자 수와 명단
 3.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4. 회순
 5.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6. 의결 내용, 의결 방법, 표결 결과가 포함된 회의결과
 7. 회의 녹취록
- ② '회의결과'라 함은 본 조 제①항의 '회의 녹취록'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 ③ 당의 공식적인 대의 및 집행기구의 회의는 회의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제42조 (회의록)

전국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43조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수인의 서기를 지명한다.
- ② 서기는 회의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 ③ 의장은 전국위원회 후 5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한다.
- ④ 의장은 회의록의 보관을 책임지며, 실무는 당 사무총국 및 사무처에서 한다.

제44조 (회의결과의 공개)

- ① 의장은 5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 ② 각 회의결과의 공개는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에게 공개한다.
- ③ 각 회의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45조 (회의록 및 회의결과의 정정)

- ①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회의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 ② 각 회의 참가자는 회의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에게 회의결과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정정 신청이 있는 후 7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녹취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④ 회의결과가 정정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9장 질서

제46조 (의장의 질서유지)

-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수인의 진행요원을 지명한다. 진행요원은 회의규정 준수, 질서유지, 표결 등에 있어서 의장을 보좌한다.
- ② 의장은 회의 참가자가 회의 중에 본 당규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1. 주의 :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 2. 경고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
 - 3. 발언 취소와 사과 : 회의참가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 4. 퇴장 :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와 사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인신공격성 발언 및 폭력 행위,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 ③ 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부칙 <2025. 6. 29. 제1호>

본 당규는 2025. 6. 29.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